■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〔별지 제3호서식〕

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

연번	토지현황			허가사항					신고고발 등 현황 ⑤
	소재지	지번	지목	허가년·월·일	이용목적 (작목) ①	착수(식재) 년·월 ②	준공(수확) 예정 년·월 ③	이용의무 종료일 ④	
1	남면 행정리	180-40	답	‘26.10.30	농업용 (잔디,채소)	’26. 10.	’26. 12.	취득일로 부터 2년	
2	남면 월정리	175-7	대	‘26.11.6.	사업용 (직원숙소)			취득일로 부터 4년	

※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.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,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장성군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민원봉사과 (061-390-7056)로 연락 바랍니다.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